

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
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
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1호
「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조직 내 성희롱·성폭력은 피해자의 직장생활을 비롯한 삶 전체를
극심하게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, 이에 대한 예방 및 재발
방지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조직에 복귀하여 안전하게 일할
수 있는 대응책 마련 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재 규칙(「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」)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현행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‘성희롱·성폭력 심의위원회’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.

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직사회의 성희롱·성폭력을 예방·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 및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